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98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이주영 · 이준석 · 최수진
천하람 · 황명선 · 김용태
윤재옥 · 유용원 · 서지영
김예지 · 인요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음.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으로,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쇠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동안의 정부정책은 이미 노쇠하여 치료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어

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연장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

이에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의 지속과 노인성 질환 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6호,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제53조 제3항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쇠”란 정상적인 노화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생리,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질환, 낙상, 사망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장에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노쇠예방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쇠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노쇠예방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노쇠극복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쇠의 예방, 진단,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노쇠극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노쇠극복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노쇠극복연구사업 기획
 2. 노쇠 예방·진단·재활을 위한 중개·임상 연구
 3. 노쇠 조사·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분석·제공
 4. 노쇠극복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의 사업 수행 절차 등 제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1조의2(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노쇠”란 <u>정상적인 노화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생리,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질환, 낙상, 사망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태를 말한다.</u>
<u><신설></u>	<u>제30조의2(노쇠예방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쇠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노쇠예방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u>제30조의3(노쇠극복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쇠의 예방, 진단,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노쇠극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u>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신설>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노쇠극복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노쇠극복연구사업 기획
 2. 노쇠 예방·진단·재활을 위한 중개·임상 연구
 3. 노쇠 조사·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분석·제공
 4. 노쇠극복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의 사업 수행 절차 등 제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 2 및 제30조의3에 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